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 선고 2020가합4007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피고B(개명전: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진주, 손수정

변론 종결2021. 8. 27.

판결 선고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2015. 7. 2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5호로 'D는 원고에게 1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9.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의 3).

나. D는 2019. 1. 1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1934호로 '원고의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5 사해행위취소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31,090,698원 및 그 중 1,373,008,506원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의 3, 4).

다. D는 2015. 7. 22. 피고와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3.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현 F지역주택조합, 이하 'F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갑 제4호증).

라. 피고는 2021. 4.경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D와의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1934호 소송 계속 중 2017. 11. 30. 채권양도통지서(갑 제4호증)를 서증으로 제출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2. 3.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7. 11. 30.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1934호)의 소장에는 D가 피고 등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D의 소장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D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2,031,090,698원 및 그 중 1,373,008,506원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선택적으로,

가)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무자력이었음에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서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는, 피고는 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D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2007년경 이후 2015년경까지 D에게 변제를 촉구하거나 D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D의 대표이사 G를 형사고소를 하는 등 D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D가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D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한 위 가장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로부터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가장행위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채무의 변제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로 부산 H 외 118필지에서 공동주택 등의 건축·분양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G는 2005. 8.경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I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온 사실[갑 제1호증의 1, 참고로 원고도 G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2006. 1.경 G로부터 당좌수표(발행인 I, 배서인 D)를 교부받아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5호 판결을 선고받음], ② 피고가 I에게 2006. 9. 12. 100,000,000원, 2006. 10. 18. 50,000,000원, 2006. 12. 22. 400,000,000원, 2007. 2. 6. 40,000,000원, 2007. 2. 8. 10,000,000원, 2007. 2. 21. 21,000,000원, 2007. 2. 22. 40,000,000원, 2007. 3. 29. 30,000,000원, 합계 69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제3, 4호증), ③ 피고는, I이 지급기일 2007. 3. 1.로 정하여 발행한 액면금 875,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소지하고 있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는 순차로 G, J(I 대표이사) 및 D(대표이사 G)의 서명·날인이 있는 사실(을 제5호증), ④ 피고는, I이 지급기일 2007. 3. 31.로 정하여 발행한 액면금 600,0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소지하고 있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는 순차로 G, J, D의 서명·날인이 있는 사실(을 제6호증), ⑤ D는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55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 10.인 2006. 9. 2.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7. 12. 5.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26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1호증), ⑥ 피고는 2008. 5. 1.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L대 105.8m²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08카단6756호, 청구금액 1,5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제2호증), ⑦ 피고는 G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3억 원으로 모두 해결하자는 말을 듣고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피고 본인신문 결과)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직접 D에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채권양도가 피고와 사이에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업과 관련하여 I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 금원을 지급하여 D로부터 액면금 1,55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받고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로서 D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1/5 수준에 불과한 3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D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D의 채무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D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와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 여러 의혹 사항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고 부족하고, 나아가 채권의 허위성에 관한 주장 외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와 D사이의 통모 사실을 별도로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진숙

판사권슬기

판사김웅수

별지